



 금융위원회	<b>보도자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8.24(목) 조간	배포	2017.8.23.(수)

<b>책임자</b>	금융위 자본시장과 박민우 과장 공정시장과 손영채 과장 자본시장조사단 최유삼 단장	<b>담당자</b>	최 성 규 사무관 (02-2100-2655) 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93) 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
	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박은석 국장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김성태 상무 코스닥시장본부 정운수 상무 시장감시본부 김영춘 상무		김 영 철 부국장 (02-3145-5570) 라 성 채 부 장 (02-3774-8580) 박 승 배 부 장 (02-3774-9600) 김 윤 생 부 장 (02-3774-9020)

## 제 목 :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,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▶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대상 대폭 확대
- ▶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대폭 강화
- ▶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 집중 조사

### I. 추진배경

-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
  -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,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필요
  -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\*를 운영 중이며, 공매도 거래비중도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\*\*
    - \* 무차입 공매도 금지,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호가제출 제한,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
    - \*\*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('16년)
      - 코스피(6.4%), 코스닥(1.7%), 日 JPX(39.4%), 美 NYSE(42.4%)
-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·처벌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

<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('16.11월 발표) >

내 용	일 정
<b>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</b> *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“공매도 과열종목”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	<b>'17.3.27 시행</b> (거래소 규정 개정)
<b>②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</b> - 공매도 규제 위반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- 공매도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	<b>'17.3.27 시행</b> (거래소 규정 개정)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
<b>③ 공매도 잔고 보고·공시기한 단축</b> * (현행) T+3일 → (개선) T+2일	<b>'17.5.22 시행</b> (금융투자업규정 개정)
<b>④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</b>	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

⇒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후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

## II. 「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」의 성과 및 한계

### 성 과

- '17.3.27일부터 시행한 「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」\*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  - \*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
    - ① 당일 공매도 비중(공매도대금/전체거래대금) 20%이상(코스닥 15%)
    - ②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%이상
    - ③ 전일증가 대비 주가 하락률 5% 이상
  -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('17.3.27~7.26)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, 코스닥 6회 지정
  -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,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\*한 것으로 나타남
    - \* 공매도 과열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일(T) 대비 주가 추이 : (T+1) +0.4% → (T+5) △0.4% → (T+10) +1.0%

## 한 계

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**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\***,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**제재수준이 낮아** 실효성이 미흡\*\*하다는 지적 상존

\* 당초 '16년도 시물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6.6(코스피)~8.2(코스닥)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.8(코스닥)~16.6(코스피)거래일당 1건 수준  
· ①상승장 도래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,  
· ②'알려진 약재'의 경우 실재도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 미충족

\*\*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(무차입 공매도 금지, 호가제한 등)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 기준을 적용(과실여부 등에 따라 법정기준액의 75%까지 감경 가능)

⇒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

### III. 개선방안

①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

①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“**공매도 비중 요건**”을 인하하고\*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\*\*

\* (예) 코스피 20% → 18%, 코스닥 15% → 12%

\*\* (예)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(상한 20%)

② 공매도 “비중 증가율”을 “**거래대금 증가율**” 요건으로 대체하고 **주가 급락 등\*\***의 경우 “**공매도 비중**” 요건을 배제

\* (예)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 배수(코스피 6배, 코스닥 5배) 이상

\*\* (예) 주가가 △10% 급락하거나,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% 이상인 코스닥 종목(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별도관리 필요)

<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>

구분	현행	개선안		
주가 하락률	△5% 이상	△5~△10%	△10% 이상	-
공매도 비중	코스피 : 20% 코스닥 : 15% (당일 기준)	코스피 : 18% 코스닥 : 12% (당일 기준)	-	코스닥 :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% 이상인 종목
증가율	공매도 비중 2배	코스피 : 공매도 거래대금 6배 코스닥 : 공매도 거래대금 5배		

②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**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**

○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·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**고의가 없더라도**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**중과실로 처벌**하는 등 **양정기준을 상향 조정**

\*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과태료 수준 예시(건당, 만원)

· (기존)과실·경미/보통: 750~1,500 → (개선)중과실·보통/중대: 4,500~5,400

※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[별첨2] 「공매도 제재기준 강화 방안」 참조

③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**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**

○ 금융당국의 **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**하여 불공정거래 여부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, 호가내역 등 **공매도 소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**

\*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(약재성 공시 등)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관계당국(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등)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 실시

### IV. 기대효과

□ 공매도 과열종목 **적출빈도를 대폭 확대**하여 투자자 **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**

<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(추정)>

구분	기존	개선안
'16년도 기준	(코스닥) 8.2거래일 (코스피) 6.6거래일	(코스닥) 0.8거래일 (코스피) 2.3거래일
'17년(3.27~7.26) 기준	(코스닥) 13.8거래일 (코스피) 16.6거래일	(코스닥) 0.8거래일 (코스피) 5.2거래일

□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**집중점검 및 제재강화**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**경각심을 제고**하고 **공정한 거래질서 확립**에 기여

### V. 향후 계획

□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'17.9월말부터 시행

□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개정·시행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